국립외교원 공무직(미화)근로자 채용 공고

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시설관리(미화)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,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0일
국 립 외 교 원 장

1. 채용 개요

연번	채용 분야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	근무지
1	공무직 (미화)	2명	계약체결일 ~ 정년 (무기계약직)	국립외교원

2. 응시자격

□ **공통 자격**

○ 18세 이상인 자로(**'08.12.31.** 이전 출생자) 채용**공고 마감일('26.10.27.)**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**정년(65세)**에 도달하지 않은 자

○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< 채용결격사유 >

①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개정 2024.12.31.>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□ **응시 자격**

구분	응시자격
공무직 (미화)	- 신체 건강하고, 미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

※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.

□ **가점 사항 (채용공고 마감일 기준)**

구분		부가 점수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서류전형 만점의 3%

3. 채용 절차

채용공고	⇒	원서접수	⇒	서류전형 결과발표	⇒	면접전형	⇒	최종합격 예정자결정
´26.10.20.(화) ~ ´26.10.27.(화)		**´26.10.20.(화) ~ ´26.10.27.(화)**		**´26.11.17.(화)**		**´26.11.24.(화)**		**´26.12.08.(화)**

○ 서류전형 방법

채용분야	내용
공무직 (미화)	○ **(적극심사)**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**5배수 초과**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적극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선발 인원의 **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**로 결정

	- **(심사요소)** 지원분야 적합성, 지원분야 전문성, 기대성과 발전가능성, 자기소개서, 사회형평가점 * 감점은 블라인드 채용 위반과 관련 양식 미준수 등에 적용 -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-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(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) ○ **(소극심사)**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**5배수 이하**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**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**로 결정(소극 심사) 소극적 서류전형(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) ※ 단,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(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,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%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, ③ 기타 ① ~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)의 경우는 탈락 처리

○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○ 면접전형 방법

채용분야	내용
공무직 (미화)	○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○ 평정요소를 상(10점), 중(6점), 하(2점)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- 평정요소 : 1. 근로자로서 정신자세, 2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3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4.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○ 불합격 기준*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*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했을 때 ○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>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*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하여 결정

○ 최종합격예정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

채용분야	최종합격자	예비합격자(운영기한)
공무직(미화)	2명	2명 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)

-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전 최종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·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예정자 발표

※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
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
-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(단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4. 전형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 기간	**'26.10.20.(화) ~ '26.10.27.(화)**	나라일터, 외교부 홈페이지, 국립외교원 홈페이지
원서접수 기간	**'26.10.20.(화) ~ '26.10.27.(화)**	E-mail 접수
서류전형 결과 발표	**'26.11.17.(화)**	나라일터, 외교부 홈페이지, 국립외교원 홈페이지
면접전형	**'26.11.24.(화)**	
최종합격예정자 발표	**'26.12.08.(화)**	나라일터, 외교부 홈페이지, 국립외교원 홈페이지
채용 예정일	**'27.01.04. 이후(협의)**	계약서 등 작성 및 근무 개시

※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(변경된 일정은 나라일터, 홈페이지(외교부, 국립외교원)를 통해 사전 공지 예정)

5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□ **원서 접수 기간 : '26.10.20.(화) ~ '26.10.27.(화) [18:00]**

○ 원서 접수 방법 :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

* 접수기간 마감일 18: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

-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 주소 : **admin-knda@mofa.go.kr**

※ 제출 서류(서명본)는 **1개의 pdf 파일**로 제출하며, 메일 제목은 "**미화사원(응시자 성명 _ 이메일 주소)**"**으로** 표기

○ 응시자 제출서류(붙임 양식 사용)

- 응시원서 1부
 ※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기재(절차 등 필요사항은 기재 이메일로 공지함)
- 자기소개서 1부
 ※ 간접적으로 출신지역, 학교명, 가족 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, 해당 사항 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취업제한 체크리스트,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(자필서명 필요)
- 장애인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 ※ 해당시, 가점 부여사항 기재 필요

※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

6. 근무조건 및 업무

□ 근무조건

채용 분야	계약기간	근무시간	보수
공무직 (미화)	계약체결일 ~ 정년 (무기계약직)	1일 8시간(07:00~16:00) 주5일 40시간근무	**2,133,000원/월 (세전)**

※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외교부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등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담당업무

○ **청사 내·외부 청소, 환경 미화, 강의실 재배치(사무집기류 이동), 방역, 제설작업 등**

○ 기타 채용권자가 부여하는 업무

7. 유의사항

□ 채용서류 파기 관련

○ 채용서류는 합격자 발표 이후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
□ 채용비리 관련

○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
○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(공정채용 확인서)를 제출

○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규정 제27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□ 기타 유의사항

○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
○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, 결격사유조회,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**('26.10.27.(화), 18시)**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
○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* 지참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
*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(사진포함, 유효기간 내)

○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
○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(02-3415-5509)에게 문의

붙임 1. 응시원서
2. 자기소개서
3.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취업제한 체크리스트,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각 1부. 끝.

응 시 원 서

<table>
<tr><td>지원분야</td><td>공무직(미화)</td><td>접수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>(한글)</td><td>생 일
(월, 일)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연 락 처</td><td>(본인휴대폰)</td><td rowspan="2">이메일</td><td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(비상연락처)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가점사항 여부
(서류전형 만점의 3%)</td><td colspan="3">□ 장애인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10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</td></tr>
</table>

자 기 소 개 서

【 작성요령 】

①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

② 지원동기, 생활신조와 가치관, 미래 전망, 성품,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, 대인관계, 성격의 장·단점,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

③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(폰트는 맑은고딕, 글씨크기 11, 줄간격 160mm, 글자색 검정색)

④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.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작성

2026. 10. . 작 성 자 :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외교부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,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소, 연락처 등	공무직 채용 관리	**5년**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동의 ☐ 미동의 ☐

□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	공무직 채용 관리	**5년**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동의 ☐ 미동의 ☐

□ 복수국적자,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

제공받는 자	제공목적	제공 항목	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
법무부 국적과	공무직 채용 관리	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	**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**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동의 ☐ 미동의 ☐

※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.

※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.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10월 일

성명 (서명)

국립외교원장 귀하

취업제한 체크리스트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부패방지권익위법"이라 한다)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 해당되는 문항 []에 체크 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 공직자: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조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및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[]해당 []비해당
2. **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: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조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[]해당 []비해당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[]해당 []비해당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82조제1항제1호)	[]해당 []비해당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[]해당 []비해당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이내)	[]해당 []비해당
4-3.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(2016.3.29. 제14145호) 시행(20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82조제1항제2호, 부칙 제2조)	[]해당 []비해당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82조제1항제1호)	[]해당 []비해당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82조제1항제2호)	[]해당 []비해당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6년 10월 일

생년월일: 년 월 일 지원자: (서명)

국립외교원장 귀하

■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[별지 제6호서식]

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성 명:

생년월일:

위 본인은 **2026년 외교부 국립외교원 채용시험**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,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결정의 취소 또는 채용의 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결격사유

①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개정 2024.12.31.>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6년 10월 일

확인자: (서명)

국립외교원장 귀하